

(사)대한화장품협회
KOREA COSMETIC ASSOCIATION

직인생략

0723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, 907(여의도동, 금산빌딩) /전화*02-761-4203/팩스*02-782-6659
담당부서 : 대외협력팀 부서장 : 송자은 차장 담당자 : 고정은 대리 e-mail: jenko@kcia.or.kr

대한장협: 제2-88호

시행일자: 2017.2.17.

수신자: 화장품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

업자 대표이사

참 조:

제 목 : 「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준수 협조 요청의 건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-1026(2017.2.10.)관련입니다.

3. 위 호와 관련하여 개정 된 「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17년 7월 1일부터 “세정, 각질 제거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에 남아있는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”이 아래와 같은 유형에서 사용이 금지됩니다. 이에, 각 사에서는 화장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 제조·판매될 수 있도록 관리(다만, 수출품에 대해서는 수출국 규정을 따름)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아울러, 해당 규정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으신 경우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우리 협회(e-mail : jenko@kcia.or.kr)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「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[별표 1]

미세플라스틱(세정, 각질제거 등의 제품*에 남아있는 5mm 크기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)에 해당하는 제품유형

* 화장품법 시행규칙 [별표3]

「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[별표 1]

미세플라스틱(세정, 각질제거 등의 제품*에 남아있는 5mm 크기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)에 해당하는 제품유형

1. 화장품의 유형

- 가. 영·유아용 제품류, 1) 영·유아용 샴푸, 린스, 4) 영·유아용 인체 세정용 제품, 5) 영·유아용 목욕용 제품
- 나. 목욕용 제품류
- 다. 인체 세정용 제품류
- 아. 두발용 제품류, 1) 헤어 컨디셔너, 8) 샴푸, 린스, 11)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(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)
- 차. 2) 남성용 텔کم(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), 4) 세이빙 크림, 5) 세이빙 폼, 6) 그 밖의 면도용 제품류(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)
- 카. 6) 팩, 마스크(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), 9) 손·발의 피부연화 제품, 10) 클렌징 워터, 클렌징 오일, 클렌징 로션, 클렌징 크림 등 메이크업 리무버, 11) 그 밖의 기초화장용 제품류(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)

※ <참고> 유엔환경계획(UNEP)에서 화장품에 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성분으로 언급한 22개 성분리스트
Polyethylene, Polypropylene, Polystyrene, Nylon-12(polyamide-12), Nylon-6, Poly(butylene terephthalate), Poly(ethylene isophthalate), Poly(ethylene terephthalate), Poly(methylmethacrylate), Poly(pentaerythritol terephthalate), Poly(propylene terephthalate), Polytetrafluoroethylene(Teflon), Polyurethane, Polyacrylate, Acrylate copolymer, Allyl stearate/vinyl acetate copolymers, Ethylene/propylene/styrene copolymer, Ethylene/methyl acrylate copolymer, Ethylene/acrylate copolymer, Butylene/ethylene/styrene copolymer, Styrene acrylate copolymer, Trimethylsiloxysilicate(siliconeresin)

(사)대한화장품협회장